

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!

성북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
외 1건 검토 보고

1. 기획예산과-12613(2015.10.19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제237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본회의(2015.10.15)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이송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가. 조례안명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공포안
-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공포안

나. 제안이유

- 제237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 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1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공포안」

- 제명 변경 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」
→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」
- 녹색제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(안 제2조)
- 녹색제품 용어 정비 및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문장 정비 (안 제1조 ~ 안 제14조)

2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공포안」

-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함(안 제9조)

라. 재의요구 여부 : 재의요구 없음

- 1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공포안」
- 2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공포안」

붙임 : 1. 검토의견서 각 1부.

2.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안」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」 각 1부. 끝.